

「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정도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청년 미취업자들을 위한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구미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3조)
- 청년취업 지원사업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청년미취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행·재정적 지원 및 법인·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청년기본법」 제17조
 -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8조의4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기 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청년 미취업자들을 위한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, 청년취업 지원사업에는 면접 지원 서비스 같은 실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탐방 및 견학을 통한 견문 확대,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를 통한 취업정보 교류 등 취업의욕 증진과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고용촉진 및 사회안정을 통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관련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들을 청년의 수요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임.